

# 건축자재 임대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

단순노무 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직업관련성 높음

### 1 개 요

문○○(55세, 남)은 2000년 8월 건축자재 임대업체에 입사하여 파이프 및 판넬에 붙은 콘크리트를 떼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3년 전부터 이명이 있었고, 상기 작 업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 2000년 12월에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이명증 및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 2 작업환경

근로자는 입사이후 건축자재(파이프와 판넬 등)에 붙은 콘크리트를 망치나 낫을 이 용하여 떼어낸 후 품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은 야외에서 이루어지 면 하루 평균 100~150개 정도의 파이프 작업을 하고, 비틀린 파이프는 반듯하게 펴 는 작업도 실시한다. 통상 한 파이프에 30회 정도의 망치질을 하며 떨어지지 않은 콘 크리트는 낫으로 긁어 낸다. 망치작업시 파이프는 최대노출소음이 130.8dB(A), 판넬 은 120.0dB(A) 수준이었다.

## 3 의학적 소견

근로자의 청력손실과 이명 정도 및 질병 진단을 위하여 순음 및 어음청력검사, 중 이검사, 이명검사, 변조이음향반사 및 정성뇌간유발검사를 실시하여 난청 및 이명증 으로 진단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귀는 250Hz에서 4000Hz까지 중도에서 중고도, 8000Hz에서 고도의 완만히 하락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삼분법 평균 58.3 dBHL)으로 나타났고, 좌측 귀는 250Hz에서 1000Hz까지 중도난청을 보이다가 그 이후 주파수에서 고도로 완만히 하락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삼분법 평균 56.6dBHL) 으로 나타났다. 어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 귀는 60dBHL(80%), 좌측 귀는 55dBHL(60%) 으로 측정되었다. 고막운동도는 A형이며, 이명검사에서는 좌, 우측에서 이명이 발생되며 이명의 크기는 4000Hz 협대역 소음(narrow band noise)에서 72dBHL으로 규명되었다. 정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V파가 좌, 우측 모두 50dBHL 까지 존재하였으나 형태가 불완전하여 60dBHL로 추정되었다. 근로자는 입사이전 건축자재 임대업종에 약 8년정도 근무하였고, 수행한 업무는 현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였다.

#### 4 결 론

문○○의 소음성 난청과 이명증은

- ① 파이프 및 판넬 작업은 120dB(A) 내외의 충격음에 노출되는 작업이고,
- ② 현재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 ③ 소음성 난청에서는 이명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소음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질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